파주시 공고 제2026-282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9항 및 시행령 제15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3. (15일간)
3.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송달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유*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44, ***동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9항 및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위반 - 묘지 설치 구역 200미터 이내 도로 인접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21-2 개인묘지 이전명령	반송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최*익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30번길 **			
홍*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857번길 **			

※ 등기 발송일: ‘26. 10. 20. / 반송일: ‘26. 10. 29.

5. 법적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문 의 처: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031-940-2494)
7. 유의 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 기간 및 사전통지기간(2026. 11. 16.) 내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출석을 통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파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